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타임폴리오워드타임증권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2. 작성기준일 : 2025.02.20
3. 정정사유 :
 -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 (매월 15일 및 말일 → 매일 환매)
 -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
 -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이전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2021.10.21. 시행)
 -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2025.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사항 반영(23.02.28 시행)
4. 효력발생일 : 2025.03.13

<신탁계약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환매수수료 삭제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u>있음</u>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각 호와 같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u>없음</u>
제 21 조(운용행 위 감시 의무 등)	신탁업자가이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① 신탁업자는 ---요구해야 한다. <추가>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u>제 3 영업일</u>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신탁업자는 --요구해야 한다. <u>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u>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3 영업일 이내에 - 공시하여야 한다.
제 23 조 (판매가격)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① 수익증권의 -- <u>제 3 영업일</u> 에--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u>제 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수익증권의 -- 3 영업일 에--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5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및 환매수수료 삭제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른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매월 1 일부터 매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단, 매월 15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매월 16 일부터 매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14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15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 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삭제>

		<p>는 기준가격. 단,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아래 각 호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1. 매월 1일부터 매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2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단, 매월 15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2. 매월 16일부터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20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단,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 판매회사는--<u>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u>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② 제 24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u>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20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21 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u></p> <p><u><삭제></u></p> <p>③ 판매회사는--<u><삭제></u>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제 26 조 (환매연기)</p>	<p>환매주기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p>	<p>⑦ 집합투자업자는 --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 이 일정한 날의 <u>제 18 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영업일 전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⑦ 집합투자업자는 --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 이 일정한 날의 <u>18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삭제> 19 영업일 전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제 39 조 (환매수수료)</p>	<p>환매수수료 삭제</p>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4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6 개월 미만 환매시 : 환매금액의 2.00%</p> <p>2. 6 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시 : 해당사항 없음</p> <p>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저축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 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u>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제 41 조 (신탁계약의 변경)</p>		<p>④ 수익자가 --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u>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39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u>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수익자가 --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u><삭제></u>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 그러하지 아니한다.</p>

제 43 조(투자신탁의 해지)		③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39 조의 규정과는 관계 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집합투자업자 주소지	주소지 이전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집합투자업자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안내>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16. 이 투자신탁의 특정 수익자 환매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매도할 경우에 피투자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되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이익금이 아닌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환매 시 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삭제>
	환매주기 변경	18.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 기준일이 매월 2 회 특정한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일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어 투자자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투자자금 회수 시의 환금성 제약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요약정보			
투자비용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제 3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7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제 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3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7 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1. 매월 1 일부터 매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15 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15 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월 16 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매월 16 일부터 매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말일 17 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시 익영업일에 청구	1. 17 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1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20 영업일</u>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2. 17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15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21 영업일</u>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환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삭제	A, A-e, AG, C, C-e, CG, C-l, S, C-s, C-w, C-P, C-Pe, S-P : - 6개월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00% -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환매수수료 삭제	[종류형 구조] - 환매수수료 <u>6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2.0%</u> <u>6개월 경과 후 환매 시: 없음</u>	[종류형 구조] - 환매수수료 <삭제>
10. 집합투자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구의 기준가격이 제 1 영업일 경과 후에 ---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재간접 투자의 특성상 피투자집합투자구의 기준가격이 1 영업일 경과 후에 ---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환매수수료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특정 수익자 환매에 따라 피투자펀드를 매도할 경우에 피투자펀드에서 성과보수가 발생되어 이 투자신탁 전체의 가치 및 잔존수익자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이와 같은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고자, 이익금이 아닌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환매대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환매 시 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 발생 시에도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삭제>
10. 집합투자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투자위험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노출됩니다. <u>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u>	-환매청구시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 노출됩니다. <삭제>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제 3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u>제 4 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3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환매주기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u>매월 1일부터 매월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일 1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u> <u>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15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일 16일부터 당일 말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u>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②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1 영업일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② 매월 16일부터 매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전영업일)까지 환매 청구 시: 당월 말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로부터 제 1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20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단, 매월 말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 시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월 1일부터 익월 15일까지 환매 청구기간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본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18 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음 환매기준일로부터 제 18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18 영업일 전일(환매청구 기준일의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삭제> 19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환매수수료 삭제	(9)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빈번한 환매를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빈번하게 환매하실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는 계속 투자 중인 기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환매수수료 부과 후에 실제로 수령하시는 금액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예상하신 금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① 6개월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2.00% ②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 시: 해당사항 없음 ※ 판매회사는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저축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 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9)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환매수수료 삭제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table border="1" data-bbox="491 1704 984 1854"> <thead> <tr> <th>중도환매 불가</th> <th>중도환매시 비용 발생</th> <th>중도환매 허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10)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table border="1" data-bbox="1002 1704 1495 1854"> <thead> <tr> <th>중도환매 불가</th> <th>중도환매시 비용 발생</th> <th>중도환매 허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u>○</u></td> </tr> </tbody> </table>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u>○</u>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u>○</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u>1. 6개월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2.00%</u> <u>2. 6개월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시: 해당사항 없음</u>	환매수수료 <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세법 제 57 조의 2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 <u>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u> <u>*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u>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 조의 2 개정사항 반영 (23.02.28 시행)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사유 - 가입자의 사망, <추가> 해외이주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타임폴리오워드 타임증권모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 접형)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3)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라.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제 2 항 반영보완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 요구하여야 합니다. <추가>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을 ---- 요구하여야 합니다. <u>다만,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환매수수료 문구 삭제	- 집합투자업자가 ----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